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용품의 범위: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같은 호 하목에 따른 다기능보일러
2. 안전장치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
3. 안전장치의 설치기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

제82조 본문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69조 및 제71조제9항"을 "제69조, 제71조제9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5)나) 본문 외의 부분 중

(3)부터 (6)까지를 (4)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목 5)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나)(6)[종전 (5)] 중 “(4)”를 “(5)”로 하며, 같은 목 5)나)(7)[종전 (6)] 중 “(5)”를 “(6)”으로 한다.

(3)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에 적절하게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나) 가스보일러가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이 아닌 경우

(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안전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가스보일
러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설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71조의2제1항에 따
른 숙박시설에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연 락 처	(044) 203 - 527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u> <u>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가스용품의 범위: 별표 7 제4호차 목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같은 호 하목에 따른 다기능보일러</u> <u>2. 안전장치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u> <u>3. 안전장치의 설치기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u>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고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u>2020년 12월 31일</u>을 말한다.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 ----- ----- <u>2030년</u> -----.
[별표 20] <u>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및 제71조제9항 관련)</u>	[별표 20] <u>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9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u>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 4) (생략)

5) 연소기

가) (생략)

나)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

(1)·(2) (생략)

<신설>

(3)·(4) (생략)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외에도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 4) (현행과 같음)

5) 연소기

가) (현행과 같음)

나) -----

-----.

(1)·(2) (현행과 같음)

(3)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에 적절하게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나) 가스보일러가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이 아닌 경우

(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4)·(5) [현행 (3) 및 (4)와 같음]

(6) ---- (5) -----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1)부터 (5)까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자·시공자·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보일러시공 명세, 시공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작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생략) 6) ~ 9) (생략) 나.·다. (생략) 2. ~ 5. (생략)	----- ----- ----- ----- ----- ----- (7) ----- ----- ----- (6) ----- ----- ----- ----- ----- ----- ----- ----- 다) (현행과 같음) 6) ~ 9)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부 칙 < 제146호, 2015. 7. 29 > 제1조 ~ 제7조 (생략) 제8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부 칙 < 제146호, 2015. 7. 29 >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 ----- ----- ----- -----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다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같은 별표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설치

② ~ ②1 (생략)

제9조·제10조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1. (현행과 같음)

2. 2030년

② ~ ②1 (현행과 같음)

제9조·제10조 (현행과 같음)